

영재의 판별과 선발

김 언 주(충남대)

‘教育’이란 《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박용성, 2000). 맹자의 <진심(盡心)>편에서는 부모가 함께 살아 계시며 형제가 무사한 것, 하늘이나 남에게 부끄러워할 꺼림직한 일이 없는 것, 천하의 영재(英才)를 얻어 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인생의 삼락(三樂)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사들이 정년을 하면 삼락회의 회원이 된다). 맹자의 삼락의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면, 그는 이미 2400여년 전에 인간이 물질세계에 물들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끔찍한 일이지만, 오늘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나 형제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도 쉽게 팽개쳐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쫓기 위해 타인을 조금도 배려치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이다. 이런 세상을 살다보니 필자는 맹자가 말한 두 가지 즐거움은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가지 즐거움에 집착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일이다.

교육의 의미를 지닌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은 다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뽑아 낸다’ 혹은 ‘끌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이란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지만 아직 표출되지 않은 것을 끌어내어 현실화시키는 일이며,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을 성숙시키는 작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재의 판별이란 잠재된 영재성을 근거로 ‘그가 영재자원인가?’를 판단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영재의 선발이란 영재자원들 중 영재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상의 선정작업이며, 영재교육이란 선정된 대상을 가르쳐 그들이 자신의 영재성을 현실화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교육정책 중에서 현재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는 평준화(平準化)정책일 것이다. 교육계에 몸담

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의 수월성(秀越性)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논쟁을 해 왔다.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향(下向)평준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IT산업의 발달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서는 더 이상 보통우민교육정책(普通愚民教育政策)에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증하게 된 것이다.

1999년 12월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년 1월에 공표가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2002년 3월부터 영재교육을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마침내 우리도 그 동안 산발적으로 구멍가게 수준에서 이루어져 온 영재교육에 관한 논의를 국가수준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의 관심도 바뀌어야 한다. '영재교육이 왜 필요한가?'가 지금까지의 관심사였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영재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법제정 이후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문제는 다양할 것이다. 영재의 판별과 선발이라는 문제를 전제로 할 때, '누가 영재인가?'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런 영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와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누가 영재인가?'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누가 영재인가?」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누가 영재인가?'에 대한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재를 보는 시각에 따라, 판별과 같은 후속되는 모든 일들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영재인가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하나는 영재개념의 진화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영재의 범위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영재개념의 진화문제가 영재의 질(質)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영재범위의 문제는 영재의 양(量)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영재의 질(質)의 문제: 영재 개념의 진화(進化)

사실상, 영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또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Terman(1925)의 연구에서 보듯이, 영재교육 초창기에는 지력(知力)이 우수한 자를 영재로 보고 지능검사 점수가 높은 자(IQ 140이상)를 영재로 보았다. 그러나 영재 개념(英才 概念)이 진화(evolution)되면서 IQ만으로 영재를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컨대, Guilford(1967)는 지능의 구조이론을 통해, 지력에는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가 동시에 포함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Terman이 판별해 낸 영재란 수렴적 사고가 뛰어난 영재일 뿐, 확산적 사고가 뛰어난 영재라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마침내, Torrance는 창의성을 전통적 지적 능력(IQ)와 대등한 수준에서 영재성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영재개념은 진화를 거듭했다. Rensulli(1978)는 영재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반적인 지력과 창의력에 과제집착력을 포함시켰고, Lamkins(1977)는 적성과 인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반 지력의 개념도 전통적인 IQ개념과는 다르게 진화되고 있다. 한 예가 Gardner(1983)의 다중지능개념(concept of multiple intelligence)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Q로 표현되는 전통적 지능개념은 IQ라는 단일 수치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 가정에 대해 강력한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학자가 Gardner일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력은 비교적 독립된 다양한 능력, 이를 테면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음악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 지능, 개인내 지능, 개인간 지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주장을 영재개념 정의에 반영한다면, 그리고 이들 정의에 따라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영재들이 나타나고, 판별되고, 선발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재 개념은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영재개념 속에 영재성이 나타나는 분야의 특성까지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고려되지 않던 새로운 영재성의 요소가 발견될 가능성까지도 고려한다면, 영재의 정의 문제는 영재교육의 시발점에 선 우리가 풀어야 할 지난(至難)한 문제로 보여진다.

그러나, 영재의 정의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본다.

대체적으로 볼 때 학문 분야에서의 영재개념에는 Renzulli가 정의한 것처럼 일반적 지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제집착력 등은 영재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영재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지식과 방법을 충분히 학습한 후,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빼놓을 수 없는 영재성의 요소일 것이다. 창의적인 어떤 것을 창출하는 것은 순간적인 '통찰(insight)'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통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면 문제에 집중하여 끈기있게 추구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내적 동기, 즉 과제집착력이 왕성해야 할 것이다.

● 영재의 양(量)의 문제: 영재의 범위

영재의 정의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영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학교선별 위원회에서 능력과 성취수준, 교사나 친구 지명 등의 방법으로 10%-20%의 재능자원(잠재적 후보)을 선발한 후, 이들의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 등을 관찰하여 상위 1%-5%가 영재라는 판별을 한다. 즉, 전체 학생들 중 최상부 일정 %의 학생들이 영재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깔려있는 묵시적 가정은 영재는 절대적으로 판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판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재를 상위 2%, 상위 3%, 상위 5%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관련된다. 즉, 영재를 범위로 판별하는 것은 영재의 판별보다는 선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들을 상위 30%까지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의 교육여건이 많은 대상자들을 교육할 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재성이 나타나는 분야가 다양하듯이, 영재의 범위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2. 「영재판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재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재판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재의 판별이 이루어져야 영재의 선발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교육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판별과 관련된 영재교육의 선진국이 경험한 영재판별과 관련된 쟁점들을 우선 고찰해 보자.

● 영재교육 선진국에서 당면한 영재판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영재판별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어온 사항들은 다양하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 형식적 판별 방법에 대한 찬반론

Davidson(1986)은 검사를 근거로 한 판별절차들은 학생들의 영재성을 실제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형식적 검사나 평정 혹은 지명을 통한 영재판별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IQ가 110으로 나타난 학생이 IQ140으로 나타난 학생보다 독창성이나 비판적 사고가 뛰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창의력 검사도 창의력의 모든 양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료나 교사 혹은 부모에 의한 지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법도 인기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avidson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사용하여 영재아를 판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Renzulli의 재능자원을 도입하여 약 15-20%의 학생을 선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능검사, 학업성취도 검사, 창의성 검사에서 10% 이내의 점수를 받은 학생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배치한다. 세 번째 단계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학습동기 등에 관한 관찰을 근거로 부모와 교사가 지명하는 것이다.

○ 상위 3-5% vs. 개방적 재능자원 접근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전통적 방법은 학교선별위원회에서 능력과 성취도,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발된 잠재적 후보들에 관한 많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선발한다. 이 중 3-5%의 학생이 영재로 판별되고 판별과정은 종료된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는 Renzulli의 재능자원(talent pool)모델에 따라 영재를 판별한다. 이 모델에서는 일반 능력이나 특정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이 우수한 상

위 15-20%가 재능자원으로 판별된다. 우수학생이 모인 집단에서는 25% 심지어는 100%까지도 재능자원으로 판별된다.

○ 편파적 평가와 지명

‘협조적이며 명랑하며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맡은 일을 책임감있게 처리하는 학생’이 영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이런 학생을 영재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고집세고 규칙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남을 괴롭히고 교사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 영재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과연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검사들이 측정해야 할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검사의 타당도 문제와 ‘얼마나 신뢰롭게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검사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판별의 공정성

영재판별의 문제는 도구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 우리 아이가 영재로 판별되지 않았느냐?’하는 시비로부터 시작해서 ‘특정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선발된 듯 하다’는 식의 시비까지도 일어난다.

● 논쟁점을 극복하려는 노력들

이상의 논란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영재의 판별과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재의 판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영재판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사항들은 Richert, Alvino, McDonnel의 ‘판별에 관한 연방 보고서: 영재아를 위한 포괄적인 판별 방법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에 나타난 것이다)

○ 지지성(advacacy): 판별은 모든 학생(학부모)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공평성(equity): 절차에는 모든 계층의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응성(defensible): 절차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다원주의(pluralism): 영재성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포괄성(comprehensiveness): 현재 영재인 학생은 물론이고, 앞으로 영재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도 판별되어야 한다.

● 영재판별과 관련된 한국영재학회 회원들의 쟁점들

지금부터는 영재를 판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한국영재학회 회원들이 가지는 관심거리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영재의 정의의 문제: 뛰어난 한 명의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정의를 적용하여 고르고 또 골라야 하겠지만 이는 교육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영재교육의 근본 목적은 한 개인의 잠재적 영재성을 발굴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재의 정의를 엄격하게 하여 판별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성이 보이는지 충분히 관찰하여 판별하려는 시도가 중요한 일이다. 영재성의 구성요소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는 것은 숨어있는 영재를 발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영재의 판별 시기의 문제: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영재인가 아닌가를 판별한다든지, 3살박이 아이가 과학영재인가 아닌가를 판별한다든지 하는 일은 영재교육에서 벗어난 발상이다. 또한 다 성장한 3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영재인가 판별하는 것도 영재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없는 일이다. 각 분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영재의 판별과정에서 연령변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뛰어난 음악가나 수학자들은 비교적 어릴 때 영재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뛰어난 화가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보다는 늦게 영재성을 보이고 있다. 문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더 늦게 영재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 따라 영재성이 나타내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연령에서 일괄적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영재가 아닌 아이를 영재로 판별하거나’, ‘영재인 아이가 영재로 판별되지 않을’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한 영재판별의 문제: 음악에 영재성을 지닌 아이를 과학영재전문가가 알아보거나 판별하지 못한다. 음악영재는 음악영재교육 전문가가, 과학영재는 과학영재교육전문가가 판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이다. 물론, 과학자라고 해서 아직 과학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지 않은 어린 과학영재를 발굴하거나 판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부연하면, 해당분야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통해 재능을 평가할 수 있

지만, 그러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징후를 찾아내는 일은 그 분야의 영재교육전문가라야 가능한 일이다.

○영재판별의 교육프로그램의 문제: 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상품을 등급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아이를 영재라고 판별했을 때 판별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 아이가 영재성을 발휘하게 될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영재의 판별은 후속적인 영재교육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의미가 있다. 400명의 학생들이 있는 중학교에서 상위 5%를 영재라고 한다면 20명의 학생이 영재로 판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영재로의 판별'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 영재를 판별할 때 그 수준을 몇 %로 하는가는 판별된 영재들을 수용할 교육여건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그 비율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 영재판별의 문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의 시발점에 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음은 영재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실천적 관점에서 점검한 사항들이다.

○ 영재판별 방법의 객관화·다양화·통합화

영재를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종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관찰을 통한 방법이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신뢰롭고 객관적인 점에서 검사도구가 의도한 영역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 검사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창의성검사, 학력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영재의 판별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능검사는 집단용과 개인용이 있으며, 집단용보다는 개인용이 더 신뢰로운 측정치를 알려줄 수 있어 영재의 판별에 유용한 방법이다. 앞에서 논의한 Rensulli의 영재 정의를 고려해본다면 지적인 능력은 개인용 지능검사로 창의적인 능력은 창의성 검사로 측정이 가능하며, 과제집착력은 흥미검사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Lamkins의 정의에 따라 창의성과 적성, 인성/동기를 영재성의 요인으로 본다면 적성은 적성검사로, 인성/동기는 인성검사나 흥미검사로 간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영재의 정의에 따라 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문제는 각 검사도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표준화된 것인가에 달려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만으로 특수한 영역의 영재성을 충분히 판별하지는 못할 것이다. 보다 심층적으로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 영역 별로 특수한 영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과학영재를 판별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나 음악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표준화된 검사도구에 의한 영재의 판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관찰에 의한 지명이 있다. 영재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부모와 친구들에 의한 지명은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검사도구로 측정되지 않는 점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나 친구보다 객관적인 면에서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교사의 관찰에 의한 지명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학습능력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능력을 관찰할 수 있고, 일회적인 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창의적인 능력이나 동기, 흥미 등을 장시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관찰에 의한 방법은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결여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재의 판별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선행된다면 표준화된 검사에 의한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에 의한 지명 방법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영재성의 판단 준거가 되는 행동특성을 점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가 관찰자인 경우 여러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Taylor의 토렘기둥모형(Multiple talent totem poles)을 사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분야에서의 영재의 판별은 표준화된 검사도구나 부모나 교사에 의한 관찰 방법보다 전문가에 의한 관찰 및 면담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음악영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앞에서 간단한 실기 시연을 한다든지, 과학영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과학자 또는 과학교사가 면접을 하는 방법은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영재성을 나타내는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영재교육전문가로서 관찰에 의한 방법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재판별위원회의 설치

영재의 판별을 신뢰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재를 판별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제한된 지역에서 극소수의 영재들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재를 판별하려면 소수의 판별전문가로서는 역부족이다. 영재의 범위를 일반적인 영역에서 상위 5%만 보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합쳐 30만명이나 되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영재들이 판별을 받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에 찾아온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영재를 판별하는 일은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영재 판별을 위해 중앙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재판별을 위한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영재교육기관에 영재판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영재판별위원회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를 판별하고 선정하는 일과 이들을 영재교육기관에 배정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영재교육대상자들의 지속적인 평가 등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진단평가와 형성평가, 총괄 평가 등을 영재판별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한다.

영재판별위원회는 영재판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 학교에서도 영재를 일차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영재판별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듯이 영재판별전문가가 모든 학교에 있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4. 영재판별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상설화

영재를 정의하는 것 못지 않게 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가변적이며 복잡한 일이다. 사회가 변하면 그에 따라 교육의 관점이 바뀌고, 교육의 관점이 바뀌면 그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재의 판별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영재를 정의하고 판별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영재교육이 실시되기 전이나 실시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재 판별을 위한 연구는 한 영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영재판별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으로 영재판별에 관한 사항들을 정의하고 이 결과물들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각 영재판별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 영재 선발

영재를 판별하는 것과 실제로 영재를 선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영재 판별이 영재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영재 선발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영재로 판별되었다고 해서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교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재의 선발은 영재교육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영재교육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 영재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다.

영재학교는 독립된 학교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일반 학교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목적을 지닌 영재학교는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이 가능하다.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된다면 이 학교에서는 과학영재를 선발하여 과학영재교육을 하게 될 것이며, 음악영재학교가 설립된다면 이 학교에서는 음악영재를 선발하여 음악영재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중학교 과정부터 운영된다면 이 학교에는 서울거주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학생들(약 12만명)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서울과학영재학교의 정원이 300명이라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과학영재의 수는 300명으로 제한되며 이는 대상 학생의 0.25%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학영재의 비율을 전체학생의 상위 5%라고 한다면, 과학영재로 판별된 학생들 중 5%만이 과학영재로 서울과학영재학교에 선발될 뿐이다. 이 경우 그 비율이 적거나 많음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즉, 영재의 판별과 선발은 다른 일인 것이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영재교육기관으로서 영재학교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설립될 영재학교는 각 학교에서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때 그 분야에서의 영재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그 분야의 영재를 제대로 선발하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각 영재학교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를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재로 판별되었다고 해서 모두 영재학교에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로써 충분한 일이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과 같은 영재교육기관은 더 많은 영재들에게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영재로 판별된 5%만이 과학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나머지 95%는 과학영재학급이

나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영재학교보다 많은 수의 영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영재를 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가능성 있는 영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영재학교보다는 넓혀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재교육원이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영재교육원의 선발 기준이 다른 영재교육기관보다 더 엄격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영재의 판별이 보편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영재의 선발은 선발 주체인 영재교육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재의 선발은 영재를 판별하는 이론적인 바탕 위에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 영재판별과 선발의 절차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는 방법은 영재들의 연령 수준, 영재성의 분야, 영재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 부연하면, 앞에서 논의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 영재를 판별하거나 선발하려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들과 체제들을 고려해 볼 때 영재를 판별하는 전형적이거나 보편적인 방법은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를 판별하고, 판별된 영재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재교육기관에서 선발한다면 영재교육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화된 학교체제에서는 영재교육의 분야에서라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Fox(1976)가 제시한 다단계적인 영재판별 모형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의 초창기에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생각되어 소개한다.

○1차 선별 단계: 이 단계는 가능한 잠재된 영재들이 보다 많이 포함되도록 선별하는 단계로,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 흥미, 태도, 행동양식 등의 수행평가 자료를 근거로 하여 판별한다. 이렇게 판별된 학생들에게는 영재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발되거나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영재판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다.

○2차 선별 단계: 이 단계는 학업성취도 검사, 지능검사, 창의성 검사, 적성

검사 등의 표준화된 검사도구에 의한 판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영재판별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다. 따라서, 1차로 선별된 영재들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검사를 실시하여 영재를 판별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재판별위원회가 영재를 판별하는 것이다.

○3차 선별 단계: 이 단계는 대상 분야의 영재교육전문가들이 면접과 실기, 결과물들을 통하여 평가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실험하는 과정이나 실연 장면 등을 전문가들이 판별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타당한 판별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적절한 단계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치 단계: 이 단계는 판별된 영재들을 그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영재를 판별하는 최종 목표는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판별된 영재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판별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5. 맺는 말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필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영재를 발굴한다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교육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재를 찾아다니는 것에만 힘쓴다면, 성배(聖杯)를 찾아 한 평생을 방황한 중세의 기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 중에 영재가 없어 실망을 하는 것은 교육자 개인의 실망에서 끝나지만, 자신의 영재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영재성이 사장(死藏)된다면 이는 학생과 사회와 국가의 손실이다. 뛰어난 영재를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것은 오늘날 영재교육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무이다.

언뜻, 고려 때부터 시행되던 과거시험이 생각난다. 시험관이 누구이냐에 따라 어떤 유형의 동량(현대적 개념의 영재)이 뽑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뽑힌 동량들은 고려와 조선의 흥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학회회원들은 어떤 시험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험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참고>

영재교육진흥법 중 영재판별과 관련된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보급
3. 영재 판별 도구의 개발 및 보급
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과 연수
5.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6.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7.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② 국가는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영재교육진흥위원회) ①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 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기타 특별한 재능

② 제 1 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의 판별과 선발에 관한 한국영재학회의(안)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법제5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가. 1안 : 제5조에 의하면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의 심사는 시도교육청 산하에 영재교육심사위원회를 두어 담당하게 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은 교육감이 하되 그 권한을 해당 영재교육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 2안 : 실질적으로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심사 및 선발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전적으로 위임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절차 등을 중앙위원회 또는 당해 시도위원회의 심의 하에 영재교육기관이 전담하도록 함.

그리고, 각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영재심사위원회”를 둔다.

예1)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당해 대학의 영재심사위원회

예2) 영재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 영재심사위원회

- 영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및 선발

- 영재교육대상자의 성취도 수준 파악 및 평가

- 영재교육대상자의 이수 인정 및 졸업 인정 사안

- 영재교육대상자의 일반학교에서/로의 전학 및 전환 사안

※ 영재교육대상자를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을 영재교육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조 ② 제1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에서 “제5조 ② 제1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영재교육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로 수정 요함.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시행령(안)

제00조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①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의 판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여부를 판별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해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영재교육기관에서의 영재교육대상자 판별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관할지역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00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①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이하 '영재학교등'이라 함)의 장은 당해 영재학교등에서 영재교육대상자로 판별된 자가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학 또는 전학할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생선발방법에는 적성검사, 영재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및 추천,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의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생의 선발시기는 일반학교의 학생선발전으로 한다.

④영재교육대상자의 전학의 허용은 당해 영재학교등이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⑤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00조 (일반학교·일반학급으로의 전학·전환 신청) ①영재학교등의 학생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학교나 일반학급으로의 전학 또는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영재학교등의 장은 영재판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생에 대하여 일반학교로의 전학을 허가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학교로의 전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배치한다.

④제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배치할 때에는 당해 학생이 이수한 교육내용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학교급 또는 학년으로 지정·배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급으로 전학시키거나 전환 배치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 (일반학교·일반학급으로의 재배치) ①영재학교등의 장은 일반학교나 일반학급에서 수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영재판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나 일반학급으로의 전학 또는 전환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학생이나 그 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급으로의 전학 또는 전환 결정을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당해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영재학교등의 장은 영재판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의 승인 또는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영재판별위원회는 학생 등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조 (영재심사위원회) ①영재학교등에 영재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영재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및 선발
2. 학생의 일반학교·일반학급으로의 전학·전환배치 신청의 심사
3. 학생의 일반학교·일반학급으로의 전학·전환권고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4. 영재교육대상자의 성취도 파악 등 평가

5. 영재교육대상자의 졸업 인정

6. 기타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영재심사위원회는 영재학교등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학교 등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재학교등의 소속 교원

2. 교과전문가

3. 영재교육전문가

4. 교육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영재교육에 조예가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학교등의 장 등 당해 영재학교등의 소속 교원인 위원은 당해 학교 재직기간으로 한다.

참 고 문 헌

박용성(200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서울. (주)두산 두산백과BU.

Davis, G. A., & Rimm, S. B. (1985).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Fox, L. H. (1976). Identification and program planning : models and method. In P. Keating (Ed.), *Intellectual ta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Garnder, H. (1983). *Frames of mind*. London : MacMillan.

Lamkins, A. (1977). *A model : Planning, designing and evaluating identification and instructional programs for gifted, talented and/or potentially gifted children*. Albany, N. Y.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 **60**, 180-184, 261.

Taylor, C. W. (1978). How many types of giftedness can your program tolerat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2**, 39-51.

Terman, L. M. (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thousand gifted children,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